

의안번호	2203219
의 퇴 인	조국의원
회 답 일	2024.10.29.
추계번호	24D271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2호(정의)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말하며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추가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제2호(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안 제3조제2호)

-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 재해보상급여의 수급자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
 - －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법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족연금 등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례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 현행법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수급권을 갖고 있는 재해보상급여 항목은 사망조위금¹⁾이고 해당 사례는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2건

1) 시행령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

- 다만, 순직한 군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이 형제자매인 사례의 수,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해당 유족의 성별 및 연령, 장애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국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승인 및 처리된 건수는 총 192건으로 연평균 38명 발생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

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